

## 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외환은행 약관의 제5조(인감,비밀번호 등의 신고) 비밀번호 입력기 등 문구 삭제 및 제6조(입금) 내용 추가 등 문구 정비  
(구)하나은행 약관을 (구)외환은행 변경약관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
개정 전(구.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적용범위 ~ 제4조 거래방법 (생략)</b></p> <p><b>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</b></p> <p>① 거래처는 <u>거래를 시작할 때</u>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(이하 "PIN-Pad기"라 한다)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,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<u>첫거래</u>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6조 입금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(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,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,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)하거나, <u>계좌이체(다른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)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b>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~ 제9조 이자 (생략)</b></p> <p><b>제10조 지급 · 해지청구</b></p>	<p><b>제1조 적용범위 ~ 제4조 거래방법 (좌동)</b></p> <p><b>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</b></p> <p>① 거래처는 <u>예금계좌를 개설할 때</u>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<u>지급</u>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<b>제6조 입금</b>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(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,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,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)하거나, <u>계좌이체(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)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좌동)</p> <p>④ (좌동)</p> <p><b>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~ 제9조 이자 (좌동)</b></p> <p><b>제10조 지급 · 해지청구</b></p>	<p>(비밀번호 입력기 문구 삭제 및 문구 정리)</p> <p>(구.외환은행 항목 추가-계좌이체 설명 구체적 기재)</p>

<p>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<u>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처가 PIN-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~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(생략)</b></p> <p><b>제17조 면책</b></p> <p>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, 증권(어음교환소에 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·수표 등 포함)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, <u>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-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</u>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b>제18조 수수료 ~ 제24조 이의제기 (생략)</b></p>	<p>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<b>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~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(좌동)</b></p> <p><b>제17조 면책</b></p> <p>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, 증권(어음교환소에 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·수표 등 포함)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, <u>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</u>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③ (좌동)</p> <p>④ (좌동)</p> <p><b>제18조 수수료 ~ 제24조 이의제기 (좌동)</b></p>	<p>(비밀번호 기재문구 및 PIN-Pad기 문구 삭제)</p> <p>(문구 정비)</p>
---	--	--

개정 전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적용범위 ~ 제3조 거래장소 (생략)</b></p> <p><b>제4조 거래방법</b> 거래처는 ~ <u>자동이체</u>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</b> ① 거래처는 <u>거래를 시작할 때</u>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(이하 "PIN-Pad기"라 한다)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,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</u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<u>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</u> ③ <u>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,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6조 입금</b>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증권으로 ~ 백지보충 등의 <u>지지 않는다.</u> ④ (생략)</p> <p><b>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</b>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은행은 ~ <u>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제8조 증권의 부도</b></p> <p><b>제9조 이자</b>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,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(자기앞수표·가계수표는 <u>입금일 전날까지의</u> 기간에 대하여</p>	<p><b>제1조 적용범위 ~ 제3조 거래장소 (좌동)</b></p> <p><b>제4조 거래방법</b> 거래처는 ~ <u>자동이체</u><u>약정</u>·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</b> ① 거래처는 <u>예금계좌를 개설할 때</u>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<u>지급</u>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 <u>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,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.</u> <u>③ (삭제)</u></p> <p><b>제6조 입금</b> ① (좌동) ② (좌동) ③ 증권으로 ~ 백지보충 등의 <u>의무를 지지 않는다.</u> ④ (좌동)</p> <p><b>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</b> ① (좌동) ② (좌동) ③ 은행은 ~ <u>기록처리를</u> 신속히 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8조 증권의 부도 (좌동)</b></p> <p><b>제9조 이자</b>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,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(자기앞수표·가계수표는 <u>입금일</u>부터 <u>지급일</u> 전날까지의 기간에</p>	<p>(용어 정비)</p> <p>(비밀번호 입력기 문구 삭제 및 배열 정리)</p> <p>(구.하나은행 기준_문구 일치)</p> <p>(구.하나은행 기준_문구 일치)</p> <p>(문구 정비)</p>

<p>은행이 정한 비율로 셈한다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⑤ (생략)</p> <p><b>제10조 지급·해지청구</b></p> <p>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<u>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처가 PIN-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~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(생략)</b></p> <p><b>제17조 면책</b></p> <p>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, 증권(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·수표 등 포함)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, <u>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-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</u>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대하여 은행이 정한 비율로 셈한다</p> <p>② (좌동) ③ (좌동) ④ (좌동) ⑤ (좌동)</p> <p><b>제10조 지급·해지청구</b></p> <p>① <u>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좌동)</p> <p><b>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~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(생략)</b></p> <p><b>제17조 면책</b></p> <p>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, 증권(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·수표 등 포함)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, <u>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</u>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좌동) ③ (좌동) ④ (좌동)</p>	<p>(비밀번호 기재 문구 삭제 및 비밀번호 입력기 문구 삭제)</p> <p>(비밀번호 기재 문구 삭제 및 문구 정비)</p>
--	--	--

제18조 수수료 ~ 제24조 이의제기 (생략)	제18조 수수료 ~ 제24조 이의제기 (좌동)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